

#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'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'를 지정·고시(2020.8.28.)하였음.
- 나. 이에,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,
- 다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나. 사무명 :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

다. 출연근거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, 제58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의2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'기술-창업-성장'이 선순환하는 소규모,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추진사업비 지원이 필요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(연구소·대학)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애로사항 해결
-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 개발 지원,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바. 출연대상 기관 개요

- 기 관 명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설립목적 :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
\*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, 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지원,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
- 설립근거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
-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
- 법인설립 : 2005. 9. (유형: 준정부기관)
- 조 직 : 11본부(11실, 20팀), 1부(1팀) / 정원 174명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총 소요예산 : 3년간 2,700,000천원(연 평균 900,000천원)
- 산출근거 :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의 40% 이상 매칭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| 계         | 2023    | 2024    | 2025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출 연 금 | 2,700,000 | 900,000 | 900,000 | 900,000 |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**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“특구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 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8조2(출연 및 보조금)**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### ○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8조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**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바이오AI산업과 특구기획팀 서장원 (☎ 2133-8742)